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16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이강일 · 김현정 · 민병덕
김남근 · 신장식 · 박상혁
황운하 · 이상식 · 염태영
김문수 · 백혜련 · 허성무
박정현 · 허 영 · 송재봉
김 윤 · 조계원 · 임미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

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 국가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을 지급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u> <u>① 국가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u> <u>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u>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